성 명 서

- 통합 대학 거버넌스 구조와 대내 평가 기본 방안은
지역균형발전과 대학 존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국립대학 통합은 단순한 규모 확대나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을 막아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공공정책이다. 특히 멀티캠퍼스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대학은 각 지역 캠퍼스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문화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통합 과정은 대학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구성원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통합은 구성원의 신뢰와 동의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합 대학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은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대학교의 통합은 양 대학이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직원·조교·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에 제출한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와 통·폐합 이행계획서를 전제로 추진**되어야만 하며, 강원1도1국립대 통합 대학의 출범은 이러한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통합 준비 및 실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통합준비위원회 운영 과정과 일부 조직 및 인력 관련 논의에 대해 대학 구성원 및 지역사회는 통합 과정이 과연 **기존 합의의 원칙과 대학 구성원의 신뢰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과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 대학 **학칙 개정안** 및 **통합 대학 대내 평가 기본 방안**의 내용은 통합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춘천을 제외한 **타 캠퍼스의 위축과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자율성과 통합성의 조화를 통해 캠퍼스별 정체성과 사명을 지닌 **'분권형 멀티캠퍼스 체제' 운영이라는 통합 대학의 중장기 비전에 배치**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 캠퍼스의 축소와 소멸은 곧 지역사회의 쇠퇴로 직결되며, 이는 명백히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우리는 최근 제시된 「통합 대학 학칙안」에 따른 통합 대학 의사 구조

및 「통합 대학 대내 평가 기본 방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통합 논의 과정에서 대학 민주화의 핵심 요소인 캠퍼스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캠퍼스총장 임명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캠퍼스총장은 단순한 행정 집행자가 아니라, 각 캠퍼스의 교육·연구·행정 전반을 책임지며 구성원의 요구와 지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핵심 운영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구성원의 신뢰와 요구를 확인하는 캠퍼스총장 선호도 조사와 같은 민주적 절차가 학칙 등에서 배제된 것은, 캠퍼스의 자율적 운영과 대학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캠퍼스 구성원의 요구가 반영된 민주적 임명 절차와 이에 상응하는 인사·재정·입시 등 실질적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멀티캠퍼스 체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둘째, 통합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교무회의의 구성**은 캠퍼스 간 권한과 발언권의 심각한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각 캠퍼스총장과 학장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춘천캠퍼스의 본부 보직자 및 단과대학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캠퍼스별 특성과 여건이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이는 학사 구조 조정, 정원 문제, 캠퍼스 평가 등 강릉·원주·삼척캠퍼스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해당 캠퍼스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해야 할 **대학평의원회** 역시 캠퍼스 간 대표성과 발언권의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통합 이후 대학평의원회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수직역의 경우, 특정 캠퍼스 중심으로 위원 비율이 편중되어 있어, 캠퍼스별 교육·연구 여건과 지역사회 연계 특성,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이중적 불균형 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결과의 활용과 구조조정 논의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강릉·원주·삼척캠퍼스의 지속적인 규모 및 기능 약화와 주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곧 지역대학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지역소멸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셋째, 통합 대학의 핵심 제도인 **대내 평가 기본 방안**은 양 대학의 사전 협의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 및 제시**되었다. 통합준비위원회와 캠퍼

스 구성원의 실질적 참여없이 평가 지표와 결과 활용 방안이 마련된 것은, 통합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인 합의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넷째, **평가 주관과 관할 권한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캠퍼스 운영의 실질적 책임 주체는 캠퍼스총장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 행정부서·단과대학·학과 평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는 통합의 기본 원칙인 '캠퍼스총장의 자율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와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율성과 책임이 보장되지 않은 캠퍼스총장은 형식적 직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다섯째, **평가 지표에 포함된 규모 지수**는 운영 규모가 큰 조직과 캠퍼스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 캠퍼스와 단과대학에는 지속적인 불이익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평가대상자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조건을 성과로 간주하는 것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여섯째, **평가 결과를 조직 개편과 학생·직원 정원 조정에 직접 연계**하는 현 방안은 캠퍼스의 지속가능성과 조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평가를 통합 대학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면서, 각 캠퍼스에 그 결과의 책임과 적용을 일임하는 방식은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모두 훼손하는 부적절한 구조이다. 평가는 각 캠퍼스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의 적용 또한 해당 캠퍼스 내부에 한정되어야 하며, 평가는 축소와 감원의 도구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진단과 지원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더구나 글로컬대학사업의 기본 합의사항인 캠퍼스 간 정원 조정 불가 원칙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일곱째, **행정조직의 일방적 재배치**는 캠퍼스 기능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강릉캠퍼스 정보화본부 직원 전원을 춘천캠퍼스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되고 있으나, 정보화본부는 교육·연구·행정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조직으로, 해당 인력의 이전은 강릉캠퍼스의 행정·교육 기능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조치는 통합이행합의서에 명시된 구성원 신분 보장 및 희망자 우선 전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통합 과정에서의 신뢰와 합의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러한 중앙집

중적 인력 재배치는 멀티캠퍼스 체제의 취지에 반하며, 강릉·원주·삼척캠퍼스의 공동화와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우리는 대학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하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캠퍼스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캠퍼스총장 임명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라.

둘째, 캠퍼스총장이 각 캠퍼스의 교육·연구·행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사·재정·입시 등 핵심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보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규정·조직 및 재정적 근거를 분명히 마련하라.

셋째,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회의가 캠퍼스 간 균형 있는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하도록 구성 방식을 개선하라.

넷째, 캠퍼스 내 행정부서·단과대학·학과 운영에 관한 대내 평가는 실질적 책임 주체인 캠퍼스총장이 주관·관할하도록 제도화하라.

다섯째, 규모 중심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캠퍼스의 역할과 여건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라.

여섯째, 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과 조직 축소로 직결하는 방안을 중단하고, 지원과 개선 중심의 평가 활용 원칙을 확립하라.

일곱째, 행정조직과 인력 재배치에 관한 일방적 계획 수립을 중단하고, 캠퍼스 기능과 자율성을 고려한 충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라.

여덟째, 통합은 집중과 서열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과 캠퍼스의 공동생존을 위한 선택임을 분명히 하고, 통합 대학은 특정 캠퍼스 중심이 아닌 각 캠퍼스가 존중받는 진정한 1도1국립대학 모델로 나아가라.

2026년 1월 29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교수평의원회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조교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강릉원주대 지부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 국립강릉원주대 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삼척지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총동창회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직원연합회
국립강릉원주대교 총학생회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 강릉원주대 지부
강원대학교 삼척교수회

첨부: 참고자료 1. 2023년 지정 글로컬대학 수정 실행계획서

유형	공동

2023년 지정 글로컬대학 수정 실행계획서(수정본)

2025. 8.

강원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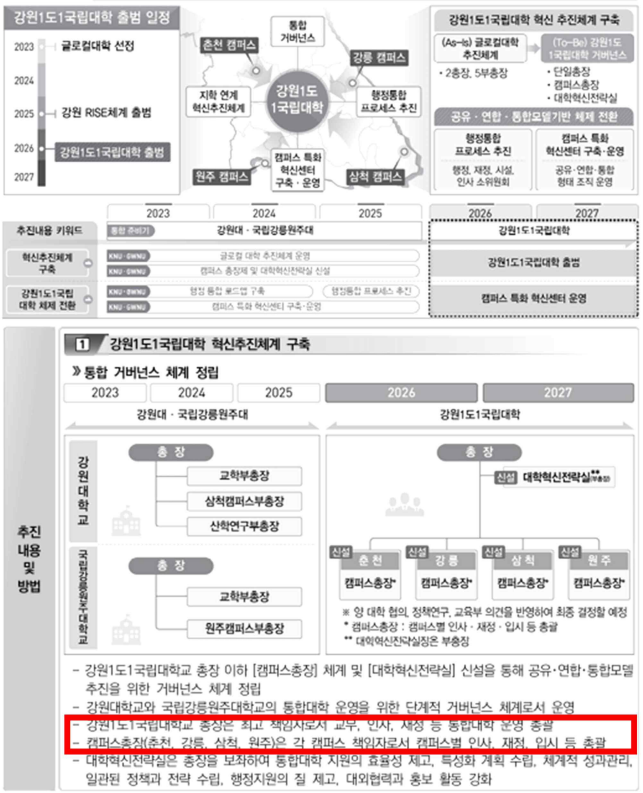

추진 내용 및 방법

소위원회	구성 위원	개최 횟수	강원1도1국립대학 추진을 위한 합의 결과	향후 논의 계획 (글로컬대학 선정 후)
인사	양 대학 총무과장, 인사·노사·총무팀장, 담당자	총 38	◦ 캠퍼스별 독립적 운영에 기본 합의 ◦ 글로컬대학 완성을 위해 소관 법령의 개정 등 정비 필요 ◦ 인력지원·운영 분야 양 대학 합의 - 글로컬대학30 선정 시부터 특정캠퍼스의 행정업무 과중이 예상되는바 인력지원을 위한 직원파견 추진('24.1~) 및 인력구조 개편 실시(통합대학 출범 전)	◦ 캠퍼스 업무지원을 위한 직원파견 및 전보 ◦ 통합대학 적정규모화를 위한 직원 정원증원 추진 ◦ 행정업무 독립 및 통합을 위한 규제개혁 제안
행정	양 대학 기획과장, 기획팀장, 담당자	총 48	◦ 캠퍼스총장 체제에 따라 현 캠퍼스별 조직·인력·업무를 원칙적 유지 ◦ 신설·통합이 필요한 조직·업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조정하되,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 이후에 양 대학 간 협의하여 결정 ◦ 법정위원회는 통합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캠퍼스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강원1도1국립대학 행정조직 개편 ◦ 통합업무 조정 방향 ◦ 글로컬대학 사업 운영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재정	양 대학 재무과장, 예산·관재팀장, 담당자	총 38	◦ 캠퍼스총장 체제에 따라 캠퍼스별 독립적·자율적 재정 운영 방향에 합의 - 캠퍼스 재정(등록금심의) 위원회 설치 - 대학회계 예·결산 등 회계 업무, 금고운영 등 재정 전반 캠퍼스별 독립 운영	◦ 캠퍼스별 재정 운영 근거 (규제개혁 등) 마련
시설	양 대학 시설과장, 시설팀장, 담당자	총 38	◦ 강원1도1국립대학의 기본모델에 따라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 권한 및 독립적 운영체제 지향	◦ 대학 간 시설업무 범위 조정 ◦ 시설직 인력 재배치

» 캠퍼스 특화 혁신센터* 구축·운영
- 대학 간 효율적 자원 활용과 학생 성공 교육을 위한 캠퍼스 특화 혁신센터* 구축·운영

* 캠퍼스 특화 혁신센터: 강원1도1국립대학 공유·연합·통합모델의 일환으로서, 통합 전 운영하던 대학별 행정조직을 재편해 공유·연합·통합의 형태로 운영하는 조직

캠퍼스 특화 혁신센터	유형 변화 (통합 전→후)	통합 전 운영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	통합 후 운영 (2026학년도 이후)
원격교육센터	공유 → 공유·통합	◦ 대학별 조직/운영 (11자형 교양교류벨트 확대)	◦ 원격교육허브-캠퍼스별 지소 설치, 원격교육 공동관리 조직 운영
KNU 창업혁신원	연합 → 연합·통합	◦ 공유·연합 프로그램 운영 ◦ 창업미네르바스쿨, 창업사관학교, 경진대회 등	◦ 창업교과목 연합 운영, 비교과 통합 운영
자연기술센터	신설 → 연합·통합	◦ 캠퍼스별 자연기술 연구회 운영 ◦ 자·학 연계 자연기술 관련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연기술 연구회 아이디어 발굴 및 고도화 ◦ 자연기술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확대 ◦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운영으로 각 캠퍼스 간 교류 확대
KNU 글로벌인재 네트워크센터	공유 → 연합·통합	◦ 해외 KNU문화원 설치, 외국인 전용학과 운영, 재학생 해외파견 지원	◦ 국제교류혁신허브, 캠퍼스별 외국인 전용학과 설치·운영

032 I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첨부: 참고자료 2. 강원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 통•폐합 이행계획서

강원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
통 · 폐합 이행계획서

2025. 7.

강원대학교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Ⅱ 통합 강원대학교 개요

○ (통합대학 출범일) 2026. 3. 1.

○ (통합대학 교명) 강원대학교

○ (통합대학 총장) 통합대학 총장은 ㈜**강원대학교 총장**이 됨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총장은 강릉캠퍼스를 관장하는 강릉캠퍼스총장(법정 부총장)이 되고, ㈜삼척·원주캠퍼스 부총장은 각각 삼척·원주캠퍼스 총장(법정 부총장)이 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 (행정조직) 총장1, 부총장1, 캠퍼스총장(법정 부총장)4, 10처, 1국

통합 전		통합 후
강원대	강릉원주대	
총장1, 부총장3, 7처 1국, 9행정실	총장1, 부총장2, 4처 1국, 2행정실	총장1, 부총장1(대학혁신전략실), 캠퍼스총장4, 10처 1국, 11행정실

○ (학사조직) 20학부, 154학과, 13대학원(일반 1, 전문 3, 특수 9)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강원대	국립강릉원주대	계	통합대학교	증감	비고
학과	76	45	121	**154**	**33**	
학부	21	4	25	**20**	**△5**	
일반대학원	1	1	2	**1**	**△1**	
전문대학원	3	-	3	**3**	-	
특수대학원	6	3	9	**9**	-	

○ (입학정원) 6,202명('23년 6,205명 → '26년 6,202명, △3명)

Ⅲ 통폐합 주요 내용

○ (통합대학 거버넌스) 통합대학 총장 이하 **'캠퍼스총장'** 체계 및 **'대학혁신전략실'** 신설을 통해 **공유·연합·통합모델**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립

- 통합대학은 개별대학으로 구성된 대학 연합 시스템인 UC 체제의 특징을 적용하여,

- 3 -

단일대학 체제로서 캠퍼스 간 정원, 예산, 정책 등을 조정하되, 캠퍼스별 자율성·독립성을 높여 대학-지역 간 연계가 강화된 시스템

< (통합)강원대학교 거버넌스 구성 계획 >

구 분	역할 및 구성
총장	◇(통합)강원대학교 총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교무, 인사, 재정 등 통합대학 운영 총괄
캠퍼스총장	◇각 캠퍼스 책임자로서 캠퍼스별 인사, 재정, 입시 등 총괄
대학혁신전략실	◇총장을 보좌하여 통합대학 지원의 효율성 제고, 특성화 계획 수립, 체계적 성과관리, 일관된 정책과 전략 수립, 행정지원의 질 제고, 대외협력과 홍보 활동 강화

- **통합대학**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무회의,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하고, **캠퍼스별 교무회의 및 평의원회**를 두어 캠퍼스 내 현안 심의하는 한편, **대학위원회**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사항에 한하여 심의

<(통합)강원대학교 의사결정 프로세스>

정책기안	의견수렴	심의	심의	심의	심의
학생, 교직원 의견반영 / 담당부서	⇨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	⇨ 학대간부회의 규정심의위원회	⇨ 캠퍼스 교무회의 캠퍼스 평의원회	⇨ 교무회의 대학평의원회	⇨ 대학위원회

(통합)강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 구성(안)	
대학위원회 (통합 후)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사항에 한하여 심의 ◇총장(위원장) 및 각 캠퍼스총장,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RISE센터장, 각 캠퍼스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춘천, 강릉, 원주, 삼척) 및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산업계 위원, 교수회장 및 캠퍼스 교수회장(춘천, 강릉, 삼척, 원주)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간사는 대학혁신전략실장이 담당

- 4 -

첨부: 참고자료 3. 강원대학교 학칙 전부개정학칙안

강원대학교 학칙 전부개정학칙안

□ 개정이유

○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 통합**('26.3.1.)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던 **학사제도**와 **대학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상위 법령 개정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칙 전반의 미비점 보완** 및 **조문 체계 정비**

○ 아울러 수의학과·치의학과 등 **특수 학과의 학사운영 특성**을 **반영**하고, 대학평의원회·교수회·교무회의 등 **대학 거버넌스 체계**를 **명확**히 하며, 장애학생 지원·등록금·장학제도 등 **학생 복지 및 권익 보호** 관련 사항을 **학칙**에 **명문화**함으로써 **통합대학**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 제고** 도모

□ 주요내용

<대학의 조직 및 운영>

○ 대학 통합에 따라 양교가 합의한 거버넌스 반영
- **총장, 캠퍼스총장, 혁신전략부총장** 등 **직위 신설** 및 **대행순서** 규정
- (교육조직) 강릉원주대 학부·대학원 반영 / (행정조직) 10처, 1국, 11본부, 33과

○ 통합대학 체제에 맞춘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교무회의 등 관련 규정 정비
- **캠퍼스별 평의원회, 교수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의결 구조·기능** 정비
- **교무회의** 구성에 **캠퍼스총장**을 **포함**하고, **캠퍼스 교무회의** 설치 근거 신설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대학위원회** 설치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 **2026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강원대, 강릉원주대) 내용 반영

○ **학사과정** 및 **학·석사 통합과정 입학자격** 관련 조문 정비

○ **편입학** 관련 **특수 학과의 학제 특성 반영** 및 편입학 근거 법령 명시

○ **2026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을 반영하여 **최소전공학점 기준** 통일·정비

○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수료학점, 이수학점 등** 학사운영 관련 규정 정비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재학연한**(학부, 대학원) **조항** 신설

- 1 -

강원대학교 학칙 전부개정학칙안

강원대학교 학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대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강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헌장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 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이 대학교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이념을 바탕으로 심오한 학술이론을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현대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 품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2. "일반대학원"이라 함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3. "전문대학원"이라 함은 전문 직업분야 인력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4. "특수대학원"이라 함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5. 이 대학교의 교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제4절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

제22조(대학평의원회 구성) ① 이 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캠퍼스별 캠퍼스평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한다.

⑥ 대학평의원회의 직능별 구성은 전임교원 50%, 직원 20%, 조교 10%, 학생 20%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율에 소수점 이하의 수가 있는 경우 반올림하여 정한다.

⑦ 각 직능별 캠퍼스 배정 인원의 수는 직능별 구성원 수의 비율에 의하며, 비율에 소수점 이하의 수가 있는 경우 반올림하여 정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1일 기준 캠퍼스 별 대학평의원회 전임교원의 수는 춘천캠퍼스 9인, 강릉캠퍼스 3인, 삼척캠퍼스 2인, 원주캠퍼스 1인으로 하며, 구성원 수의 비율 변화에 따라 그 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대학평의원회 회의)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24조(대학평의원회 기능)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 12 -

제5절 교무회의 및 위원회 등

제30조(교무회의) ① 이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를 둔다.

② 교무회의의 구성은 총장, 춘천캠퍼스총장, 강릉캠퍼스총장, 삼척캠퍼스총장, 원주캠퍼스총장, 혁신전략부총장, 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의학전문대학원장, 학장, 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글로벌대외교류본부장, 정보화본부장, KNU창업혁신원장,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 데이터보안·활용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보직교수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장, 의학전문대학원장 및 학장의 수가 전체 교무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 교무회의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교육과 연구지원 및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
2. 학부(과), 부속시설 및 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6.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캠퍼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캠퍼스 교무회의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대학위원회) ① 이 대학교에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위원회의 구성은 총장, 캠퍼스총장,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RISE센터장, 캠퍼스 소재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 16 -

참고자료 4. 통합 대학 대내 평가 기본 방안

본 방안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작성된 안으로, 향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습니다.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통합 대학 대내 평가 기본 방안

강원대학교
(기획처 평가지원과)

Ⅲ | 평가 원칙 · 방향

□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유연한 평가

- ○ 대학이 **기본 역량**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며 **높은 경쟁력**을 갖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거점국립대**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 대내외적 위기를 **예방**하고, **체계적 ·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요 지표**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평가
- ○ 고등교육 환경과 정부 정책 등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가의 탄력성** 확보

□ 책무성 · 책임경영과 연계된 평가 체계 구성

- ○ 대학 운영과 성과에 대하여 구성원과 국가 · 사회에 책임지는 **총장**의 **책무성**을 반영하여, **대내 평가 운영**과 **결과 적용 등은 총장 주관 시행**
- ○ **자율성 기반 책임경영** 방침에 따라 피평가 조직 · 부서의 장이 **성과**를 **창출**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평가 체계 구성
- ○ 평가 결과가 대학과 본부 – 단과대학 – 학부 · 학과의 **실적 개선 · 향상**에 **기여**하고, 대학 전반에 **두루 활용**되도록 **평가 간 연계성** 강화

□ 정확한 측정 · 객관적 비교로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평가

- ○ 대학 운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점검 · 진단 자료로 활용하는 **주요 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측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
- ○ 세계대학평가와 글로컬대학30 사업,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 **대내외적 환경 ·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교군 등 설정**
- ○ **연계된 전산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정확성**을 **확보**하고 일선 조직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추진

8

Ⅳ | 평가별 기본 방안

1 캠퍼스 평가

1 평가 목적

□ **자율 · 책임 기반**의 **캠퍼스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대학 동반성장 체계**를 마련하여 캠퍼스의 **지속가능성**과 **기본 역량 강화**

- ○ 공유 · 연합 · 통합의 '**강원1도1국립대학'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캠퍼스**의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 ○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대학(캠퍼스)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캠퍼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 제고**

□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표 · 성과**를 **진단 · 환류**하여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대학과 캠퍼스가 **서로 발전**하는 **선순환 평가 체계** 구축

- ○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대학 운영에 필요한 **주요 현황 지표**와 **성과**를 **진단 · 환류**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
- ○ **캠퍼스의 성과**가 **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대학의 성과**가 **캠퍼스 발전**을 **촉진**하도록 **선순환 평가 체계 구축**

2 평가 개요

□ **(평가 근거)** 「강원대학교 학칙」 ····· ※ **개정 예정**
「강원대학교 대내 평가 규정」 ····· ※ **제정 예정**

□ **(평가 대상)** 캠퍼스총장(춘천 · 삼척 · 강릉 · 원주)
※ 캠퍼스 단위 및 소재 조직의 성과를 모두 포괄하여 평가

□ **(평가 주기)** 매 학년도(매년 3월 ~ 익년 2월)
※ 「고등교육법」 제20조제1항(학교의 학년도)에 따라 학년도 주기로 설정

□ **(평가 주관)** 총장(대학혁신전략실 기획혁신처 IR혁신과)

9

3 평가 기준

□ **(평가 자료)** 캠퍼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적으로서 ①**대학정보공시**는 **평가 학년도에 공시한 자료**, ②**대학 자체 자료**는 **평가 학년도의 자료** 반영
※ 평가 지표에 따라 반영 기간 별도 적용 가능(이 경우 해당 지표에 대상 기간 명시)

□ **(평가 지표)** '**핵심 역량**', '**캠퍼스 책무성**', '**캠퍼스 특성화**', '**운영 관리** 등 4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특히 '**캠퍼스 특성화**' 영역은 **자율성과 지표**로 구성
※ 평가 지표별 세부 기준은 [붙임 1] 참조

【 캠퍼스 평가 지표 】

영역	평가 지표	평가 요소	배점	평가 구분	평가 방법
핵심 역량 (500점)	(1)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 1학년생 충원율(4·10월)	(100) 200	상대(교내)	정량평가
		• 2학년 이상 학생 충원율(4·10월)	(100)	상대(교내)	정량평가
	(2) 중도탈락률	• 1학년 학생	(30) 50	상대(교내)	정량평가
		• 2학년 이상 학생	(20)	상대(교내)	정량평가
	(3) 교육과정 운영	• 전공 교과목 개설 적정성	(20) 70	절대(공식)	정량평가
		• 전공 수업 전임교원 담당률	(50)	절대(공식)	정량평가
	(4) 연구 여건 조성 및 성과	•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수주 실적	(70) 180	상대(교외)	정량평가
		•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율	(20)	상대(교내)	정량평가
		• 전임교원 1인당 연구 실적	(90)	상대(교외)	정량평가
캠퍼스 책무성 (130점)	(1) 취업률	•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100	상대(교외)	정량평가
	(2)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비 집행률	(10) 30	절대(공식)	정량평가
		• 실험·실습실 안전교육 이수율	(20)	절대(공식)	정량평가
특성화 · 국제화 (300점)	(1) 특성화 추진 자율성과	• 캠퍼스 특화혁신센터 육성 달성도	(50) 100	절대(공식)	정량평가
		• 지역-대학 협력 기반 특성화 달성도	(50)	절대(공식)	정량평가
	(2) 캠퍼스 자율성과	• 목표값 대비 달성도	(125) 150	절대(공식)	정량평가
		• 목표값 대비 향상도	(25)	절대(공식)	정량평가
	(3) 국제화 역량	• 외국인 재학생 수 비중	(40) 50	절대(공식)	정량평가
		• 외국 대학 파견 교환학생 수 비중	(10)	절대(공식)	정량평가
운영 관리 (70점)	(1) 역량 강화 학습 이수	• 직원 평생학습 이수율	(20) 50	절대(공식)	정량평가
		• 교직원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30)	절대(공식)	정량평가
	(2) 운영 규모	• 전임교원·재학생 수 규모 지수	20	절대(공식)	정량평가
	(3) 대학정보공시	• 대학정보공시 오류 건 수 감점	0	절대(공식)	정량평가
총 계			1,000		

10

4 평가 절차 · 방법

□ **(평가 절차)**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캠퍼스총장 간 성과계약 체결 후, 평가 지표별 자료를 작성 · 분석하고 총점을 산출하여 평가 결과 확정

【 캠퍼스 평가 절차 】

○ **(자율성과 설정) 대학 · 캠퍼스의 발전계획***을 근거로, 평가 학년도에 중점 달성하려는 목표와 지표값을 포함하여 「**캠퍼스총장 자율성과계획서**」 작성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캠퍼스) 캠퍼스 발전계획

※ '26학년도는 글로컬대학 사업계획서 및 동폐합 신청서를 근거로 작성하고, 서식은 평가 계획에서 안내 예정

참고 자율성과계획서 주요 작성 요소(2025학년도 단과대학 평가)

· 자율성과지표 설정 주요 기준	· 운영 목표에 대한 달성도·향상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단과대학 · 학과 평가 지표, 특성 학과 등 성과만 반영하는 지표 설정 불가 ·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연차별로 증가하며 도전적인 목표값 설정
· 기준값 산출 및 목푯값 설정	· (기준값) 최근 3개년 실적의 평균값 · (목푯값) 기준값 대비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후 3개년 목푯값 작성 ※ 평가 학년도의 목푯값은 최소한 기준값 대비 1.25배 이상 설정하고, 이후 학년도의 목푯값은 평가 학년도보다 증가하도록 설정
· 개요 및 산출 근거	· (개요) 설정 근거, 성과지표의 개념, 설정 사유 작성 · (산출 근거) 연차별 목푯값을 산출하게 된 근거로서, 산출 과정 및 실적 측정 방법(측정 산식 포함)을 객관적으로 기술
· 실행 계획	· 학년도별로 정한 목푯값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작성

(5) 평가 자료와 이에 따른 증빙 자료 등 평가에 활용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대한 오류로 평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평가 자료를 활용한 학년도와 사실이 확인된 학년도를 모두 포함한다.)

(6) 법령 위반 사실 또는 감사 처분·조치 사항이 확인되거나, 대학 경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그 밖에 비교육적 또는 부적정한 운영 등으로 총장이 해당 캠퍼스의 등급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 평가 결과 활용

□ **(결과 공시)** *주요 평가 내용과 *캠퍼스별 총점 · 평가 등급을 우리 대학교 *대표 누리집과 *i-Square 시스템(예정)에 공시

※ i-Square 시스템 구축 완료 전까지 우리 대학교 대표 홈페이지로 공시

□ **(행 · 재정 사항 적용)** 총장은 대학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캠퍼스별 평가 등급**을 **조직관리 · 재정 배분 방안**에 적용

○ **(조직관리)** 대학본부 · 캠퍼스별 ***행정조직 개편(설치 파 · 담당관 수 조정)**과 ***직원 정원(현원) 조정**에 반영

※ 평가 등급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담당 부서에 통보 후 이행 계획 · 결과 확인

○ **(재정 배분)** **정부재정지원사업비 · 국가지원금(인센티브 성격)** 및 **대학 자체 (가칭)특별발전교부금**에 대한 **배분 여부 결정 · 배분액 산정**에 반영

【 정부재정지원사업비 등 배분 방법(안) 】

(1) 기준단가 산정	· 0≦(기준단가)=(학생 1인당 교육비[1])-(캠퍼스별 등록금 평균액[2]) ※ 기준단가가 음수인 경우, 0으로 산정 1) 대학정보공시(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2) 대학정보공시(8-차. 등록금 현황)
(2) 캠퍼스별 배분지수 산정	· (배분지수)=(기준단가)×{(편제정원*)×(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100}×(캠퍼스 평가 등급에 따른 가중치**) * 학사과정만 적용 ** 캠퍼스 평가 등급별 가중치

평가 등급	탁월	우수	적정	개선 기대	개선 필요
가중치	2	1.5	1	0.5	0

(3) 캠퍼스별 배분액 산정	· (배분액)={(해당 캠퍼스의 배분지수)÷∑(캠퍼스별 배분지수)}×(총 배분액)

붙임 1 캠퍼스 평가 지표별 세부 기준(안)

기준안은 평가 지표별 평정 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간략하게 작성**한 것으로, 본 방안 확정 후 **평가 계획 수립 시 구체화**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핵심 역량(500점)

평가 지표	평가 요소	배점	세부 기준
(1)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 1학년생 충원율 (4·10월)	100	① 캠퍼스의 4. 1. · 10. 1. 기준 정원 내 1학년 재학생 충원율을 산정하되,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반영 100≧(충원율)=(캠퍼스의 정원 내 1학년 재학생 수)÷(캠퍼스의 입학정원)×100 ② 기준 일자별 표준점수 산정 · **표준Z점수** (표준Z점수)={(충원율)-100}÷(표준편차) · **표준T점수** (표준T점수)={10×(표준Z점수)}+50 ③ 기준 일자별 점수 산정 · **4. 1. 기준** (점수)=(캠퍼스의 **교내** 표준T점수)÷(**교내** 최대 표준T점수)×0.4×**(배점)** · **10. 1. 기준** (점수)=(캠퍼스의 **교내** 표준T점수)÷(**교내** 최대 표준T점수)×0.6×**(배점)** ④ 기준 일자별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 점수 산정 (배점)≧(점수)=(4. 1. 기준 점수)+(10. 1. 기준 점수)
	· 2학년 이상 학생 충원율 (4·10월)	100	① 캠퍼스의 4. 1. · 10. 1. 기준 정원 내 2학년 이상 재학생 충원율을 산정하되,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반영 100≧(충원율)=(캠퍼스의 정원 내 2학년 이상 재학생 수)÷(캠퍼스의 2학년 이상 편제정원)×100 ② 기준 일자별 표준점수 산정 · **표준Z점수** (표준Z점수)={(충원율)-100}÷(표준편차) · **표준T점수** (표준T점수)={10×(표준Z점수)}+50 ③ 기준 일자별 점수 산정 · **4. 1. 기준** (점수)=(캠퍼스의 **교내** 표준T점수)÷(**교내** 최대 표준T점수)×0.4×**(배점)** · **10. 1. 기준** (점수)=(캠퍼스의 **교내** 표준T점수)÷(**교내** 최대 표준T점수)×0.6×**(배점)** ④ 기준 일자별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 점수 산정 (배점)≧(점수)=(4. 1. 기준 점수)+(10. 1. 기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요소	배점	세부 기준
			③ 교환학생 파견율에 따라 아래과 같이 배점

파견율	5% 초과	3% 초과 5% 이하	1% 초과 3% 이하	0% 초과 1% 이하	없음
점수	10	7	4	1	0

□ 운영 관리(70점)

평가 지표	평가 요소	배점	세부 기준
(1) 역량 강화 학습 이수	· 직원 평생학습 이수율	20	① 캠퍼스 전체 직원 중 직종별 상시학습 기준시간을 충족한 직원 수의 비중으로 이수 완료율 산정 1≧(이수 완료율)=(상시학습 기준시간 충족 직원 수)÷(전체 직원 수) ② 캠퍼스 전체 직원 중 필수교육 이수를 완료한 직원 수의 비중으로 필수교육 이수 완료율 산정 1≧(필수교육 이수 완료율)=(필수교육 이수를 완료한 직원 수)÷(전체 직원 수) ③ 반영 점수 산정 (배점)≧(점수)=[{(이수 완료율)×0.7}+{(필수교육 이수 완료율)×0.3}]×**(배점)**
	· 교직원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30	① 캠퍼스 전체 교직원 중 인권·성평등 교육을 이수 완료한 교직원 수의 비중으로 이수 완료율 산정 1≧(이수 완료율)=(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완료 교직원 수)÷(전체 교직원 수) ② 반영 점수 산정 (배점)≧(점수)=(이수 완료율)×**(배점)**
(2) 운영 규모	· 전임교원·재학생 수 규모 지수	20	① 캠퍼스의 4. 1.·10. 1. 기준 전임교원 수 평균값을 산정하고, 전임교원 규모 지수 산출 · **전임교원 수 평균값** (평균값)={(4. 1. 기준 전임교원 수)+(10. 1. 기준 전임교원 수)}÷2 · **전임교원 규모 지수** 1≧(전임교원 규모 지수)=(캠퍼스 소속 전임교원 수 평균값)÷(최대 전임교원 수 평균값*) * 전임교원 수 평균값이 가장 큰 캠퍼스의 값

평가 지표	평가 요소	배점	세부 기준
			② 캠퍼스의 4. 1.·10. 1. 기준 재학생 수 평균값을 산정하고, 재학생 규모 지수 산출 • **재학생 수 평균값** (평균값)={(4. 1. 기준 재학생 수)+(10. 1. 기준 재학생 수)}÷2 • **재학생 규모 지수** 1≥(재학생 규모 지수)=(캠퍼스 재학생 수 평균값)÷(최대 재학생 수 평균값*) * 재학생 수 평균값이 가장 큰 캠퍼스의 값 ③ 반영 점수 산정 (배점)≥(점수)=[{(전임교원 규모 지수)×0.5}+{(재학생 규모 지수)×0.5}]×**(배점)**
(3) 대학 정보공시	• 대학정보공시 오류 건 수	0 감점	① 발생한 오류 건 별로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점 유형 / 지체 정정 / 기관 모니터링 점검 / 기관 현장점검 감점 / −20 / −50 / −100 ② 반영 점수 산정 0≥(점수)=Σ{(유형별 오류 건 수)×(유형별 감점)}

2 행정부서 업무 평가

1 평가 목적

□ 행정조직이 우리 대학교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실행

○ 우리 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핵심·역점 정책**에 대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의 **업무 역량 강화**

○ 행정조직이 **대학**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혁신 성장**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업무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성과관리** 실행

□ 대학의 **정책**과 **운영**에 대한 **능률성·효과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대학-캠퍼스-교육조직 발전**에 **기여**하도록 **협력적 평가 체계** 구축

○ 대학 정책과 운영에 대한 **능률성·효과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추진 업무**를 **진단·평가**하여 **환류**

○ 행정조직의 **업무 성과**가 **대학**과 **캠퍼스**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교육조직**의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적 평가 체계** 구축

2 평가 개요

□ **(평가 근거)** 「강원대학교 학칙」 ····· ✱ **개정 예정**
「강원대학교 대내 평가 규정」 ····· ✱ **제정 예정**

□ **(평가 대상)** 행정조직(대학본부·캠퍼스본부 행정 부서, 부속시설, 행정실)
※ 학칙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행정 부서, 부속시설, 단과대학 행정실 대상
※ 단,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설치된 사업단 등 부서로서 해당 사업에 따라 연차(중간) 평가를 받는 경우는 총장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평가 주기)** 매 학년도(매년 3월 ~ 익년 2월)
※ 「고등교육법」 제20조제1항(학교의 학년도)에 따라 학년도 주기로 설정

□ **(평가 주관)** 총장(대학혁신전략실 기획혁신처 IR혁신과)

3 평가 기준

□ **(평가 자료)** 부서 업무와 관리·운영에 관한 실적으로서 **평가 학년도의 자료**를 반영하되, 평가 지표별로 반영 기간을 **별도**로 **적용 가능***
* 해당 지표에 대상 기간 명시

□ **(평가 지표)** 부서별 성격에 따라 적용하는 ˙**연계 협력 영역**과 ˙**정책 추진 영역**, ˙**부서 운영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성
※ 정책 추진·부서 운영 영역의 평가 지표별 세부 기준은 [붙임 2] 참조

【 행정부서 업무 평가 지표 】

영역	평가 지표	평가 요소·자료	배점	평가 방법	비고
연계 협력 (40점)	(1) 연계 협력 성과	• (대학본부) 캠퍼스 평가(정량 점수) • (캠퍼스본부) 캠퍼스 평가(총점) • (행정실) 단과대학 평가(총점)	40	정량평가	
정책 추진 (40점)	(2) 업무 추진 성과	• 업무보고 추진 과제 성과보고서 • 정책 추진 영역 점수 향상도	40	정성평가 정량평가	과제별 평가
부서 운영 (20점)	(3) 업무 관장 규모 지수	• 구분'에 따라 부서에서 관장하는 전임교원·재학생 수 규모 지수 * 대학본부, 캠퍼스본부, 행정실	10	정량평가	대학정보공시
	(4) 가점	• 직원 평생학습 이수 완료율 •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 완료율 • 발전기금 후원의 집 이용 실적 • PC 보안관리 수준	10	정량평가	최대 10점
	(5) 감점	• 대내 평가 조치 이행 점검·확인 결과 • 대학정보공시 오류 • 보안관리 수준·기록물 관리	0	정량평가	최대 0점
총 계			100		

참고 강원대학교 행정부서 평가 가감점 항목(2024학년도 기준)

• **가점(7개)** ※ 최대 +10점
- 직원 상시학습 기준시간 충족 실적
- 기록물 관리 점검 결과(연 1회)
- 신문·방송 등 대외 언론보도 실적
- 생활협동조합 이용 실적 (업무추진비·일반수용비)
- 발전기금 후원의 집 이용 실적 (업무추진비·일반수용비)
- 정부혁신 실행계획 참여(신규·계속)
- SDGs 관련 계획·보고·보도 실적

• **감점(6개)** ※ 최대 −8점
- 정보공시 정정 실적(내·외부)
- 보안점검 등 지적 건 수
- PC 보안관리 수준(내PC지킴이 점수)
-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 직원 연가 사용 목표 대비 사용률
- 유연근무 활용 실적(미활용 부서 감점)

4 평가 절차·방법

□ **(평가 절차)** 평가 계획 수립 후 주요 업무보고와 연계 평가, 부서 운영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 자료를 작성·분석하고 총점 산출 및 평가 결과 확정

【 행정부서 업무 평가 절차 】

□ **(평가 방법)** **평균·점수 등 산정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평가 지표별 산정 공식에 따라 환산한 점수 반영
* 다만, 실값의 경우 평가 지표 특성을 고려하여 소수점 자리를 다르게 적용 가능 (이 경우 해당 평가 지표의 산정 방법에서 명시)

○ **(연계 협력 영역)** 부서의 **업무**와 **관장 범위**에 따라 ˙**대학본부**, ˙**캠퍼스본부**, ˙**행정실**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평가 점수와 연계**하여 점수 반영

【 연계 협력 영역 평가 반영 방법 】

구분	대학본부	캠퍼스본부	행정실
적용 대상	• 대학본부 부서 • 총장 직속 부속시설	• 캠퍼스본부 부서 • 캠퍼스총장 소관 부속시설	• 단과대학 행정실 (소속 부속시설 포함)
연계 평가	• 캠퍼스 평가	• 캠퍼스 평가	• 단과대학 평가
반영 방법	• 정량 평가 지표 점수 ※ 정량 평가 지표에 대학 전체 실값을 대입·산출	• 총점 반영	• 총점 반영 ※ 소관 단과대학 비중 적용 (행정실에서 설정)

3 단과대학 평가

1 평가 목적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자율 기반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단과대학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교육 · 연구 역량**을 **증진**하도록 **측정 · 진단**

○ 단과대학 운영에 필요한 주요 현황 지표와 성과를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측정 · 평가**의 **객관성 · 정확성** 확보

○ **교육 · 연구 중요 지표**와 자체 성과목표에 기반한 **자율성과지표**를 두루 반영하여 평가함으로써 **단과대학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

□ **단과대학 성과**가 **대학 · 캠퍼스의 경쟁력 향상**과 **학부 · 학과의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대학 성과**가 **단과대학 발전**을 **촉진**하는 **선순환 평가 체계** 구축

○ 대학 운영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교육 · 연구 분야**의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단과대학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환류**

○ **대학 성과지표**의 **유기적 연계성**을 감안하여 대학 – 캠퍼스 – 단과대학 – 학부 · 학과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2 평가 개요

□ **(평가 근거)** 「강원대학교 학칙」 ····· ※ 개정 예정
「강원대학교 대내 평가 규정」 ····· ※ 제정 예정

□ **(평가 대상)** 학칙에 따라 평가 학년도에 편제된 단과대학
※ 신설 단과대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 학년도에 한하여 평가 유예 가능

□ **(평가 주기)** 매 학년도(매년 3월 ~ 익년 2월)
※ 「고등교육법」 제20조제1항(학교의 학년도)에 따라 학년도 주기로 설정

□ **(평가 주관)** 총장(대학혁신전략실 기획혁신처 IR혁신과)

3 평가 기준

□ **(평가 자료)** 단과대학의 교육 · 연구 · 운영 실적으로서 ①**대학정보공시**는 **평가 학년도에 공시한 자료**, ②**대학 자체 자료**는 **평가 학년도의 자료** 반영
※ 평가 지표에 따라 반영 기간 별도 적용 가능(이 경우 해당 지표에 대상 기간 명시)

□ **(평가 지표)** ˙**교육 · 연구 역량**, ˙**운영 여건 · 성과**, ˙**정책**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운영 여건 · 성과**' 영역에 **자율성과 지표** 포함
※ 평가 지표별 세부 기준은 [붙임 3] 참조

【 단과대학 평가 지표 】

영역	평가 지표	평가 요소	배점	평가 구분	평가 방법
교육 · 연구 역량 (520점)	(1)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 1학년생 충원율(4·10월)	(100) 200	상대(교내)	정량평가
		• 2학년 이상 학생 충원율(4·10월)	(100)	상대(교내)	정량평가
	(2) 중도탈락률	• 1학년 학생	(40) 70	상대(교내)	정량평가
		• 2학년 이상 학생	(30)	상대(교내)	정량평가
	(3) 1학년생 안착 지도	• 1학년생 꿈-설계 상담률	(30) 50	절대(공식)	정량평가
		• 신입생 특화 프로그램 참여율	(20)	절대(공식)	정량평가
	(4) 연구 여건 조성 및 성과	•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수주 실적	(70) 200	상대(교내)	정량평가
		• 대학원생 수 규모(지도교수 기준)	(30)	상대(교내)	정량평가
		• 전임교원 1인당 연구 실적	(100)	상대(교내)	정량평가
운영 여건 · 성과 (480점)	(1) 취업률	• 대학정보공시 취업률	100	상대(교내)	정량평가
	(2) 단과대학 자율성과	• 목표값 대비 달성도	(250) 300	절대(공식)	정량평가
		• 목표값 대비 향상도	(50)	절대(공식)	정량평가
	(3) 단과대학 운영 여건	• 단과대학 자체평가 공개	(50) 80	절대(급간)	정량평가
		• 전임교원·재학생 수 규모 지수	(30)	절대(공식)	정량평가
총 계			1,000		

4 평가 절차 · 방법

□ **(평가 절차)**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캠퍼스총장-단과대학장 간 성과협약 체결** 후 평가 지표별 자료를 작성 · 분석하고 총점을 산출하여 평가 결과 확정

4 학과 평가

1 평가 목적

□ 우리 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바탕으로, 학부 · 학과가 **교육 · 연구 등 역량**을 **조화롭게 증진**하도록 **측정 · 진단**

○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학부 · 학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현황 지표**와 **성과**를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환류

□ **학부 · 학과**의 **성과**가 **단과대학 – 캠퍼스 –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대학 발전**이 **학부 · 학과**의 **역량 제고**를 돕는 **선순환 평가 체계** 구축

○ **대학 성과지표**의 **유기적 연계성**을 감안하여 대학 – 캠퍼스 – 단과대학 – 학부 · 학과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2 평가 개요

□ **(평가 근거)** 「강원대학교 학칙」 ····· ※ 개정 예정
「강원대학교 대내 평가 규정」 ····· ※ 제정 예정

□ **(평가 대상)** 학칙에 따라 평가 학년도에 편제된 학부 · 학과

○ **(평가 유예 · 제외) 편제 미완성 학과**는 **편제 완성 학년도의 취업률이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되는 시점까지 유예**하고, **특수 학부 · 학과***는 **제외**
* 재직자 중심, 자유전공학부, 외국인 전용 학부 등 총장이 지정하는 학부 · 학과

○ **(평가단위 지정) 모집단위**를 기준으로 지정하되, **예과 · 본과 운영 학과***는 **본과**로 **통합 지정**하고, **통합 학부**는 **전공별 분리 평가 허용**
* 법령에 따라 예과 · 본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 §25① 단서)
※ 학부 내 모든 전공에서 분리 평가에 동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평가 주기)** 매 학년도(매년 3월 ~ 익년 2월)
※ 「고등교육법」 제20조제1항(학교의 학년도)에 따라 학년도 주기로 설정

□ **(평가 주관)** 총장(대학혁신전략실 기획혁신처 IR혁신과)

영역	평가 지표	평가 요소	배점	평가 구분	평가 방법
	(5) 학사구조 혁신	• 통합 학과 운영	30	절대(급간)	정량평가
총 계			1,000 (+100)		

4 평가 절차 · 방법

□ **(평가 절차)** 평가단위 · 평가 계열을 지정한 후, 평가 지표별 정량 자료를 분석하고 총점을 산출하여 평가 결과 확정

【 학과 평가 절차 】

○ **(실적 확인)** 점수 등 산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량 평가 지표**에 대하여 점수 산출 전 **실적에 반영되는 값(실값)**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 수행
※ (본부) 실값 공개 → (학부 · 학과) 실값 확인(필요 시 정정 신청) → (본부) 실값 확정

□ **(평가 방법) 절대평가**는 실값을 평가 지표별 산정 공식으로 **환산한 점수**를, **상대평가**는 비교 대상에 따라 산출된 **표준T점수** 반영

○ **(산정 방법)** 평균 · 점수 등 산정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표준T점수 기반 점수는 공식에 따라 산정
* 다만, 실값의 경우 평가 지표 · 요소 특성을 고려하여 소수점 자리를 다르게 적용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에서 명시)

○ **(향상도 우수 학과 선정) 캠퍼스 종합 순위**가 직전 학년도 평가 순위보다 크게 향상된 평가단위를 「**향상도 우수 학과**」로 선정

※ ˙캠퍼스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선정 여부 · 규모 등 조정 가능
˙최우수 · 우수 학과와 중복 선정 불가

【 향상도 우수 학과 선정 기준 및 지원 사항 】

• 선정 기준	· 직전 학년도 평가 순위 수보다 향상된 순위 수가 상위 10% 이내에 속하는 평가단위
• 지원 사항	· 총장 표창장 수여, 예산 지원, 전임교원 업적평가 반영

○ **(선정 · 지원 규모)** 선정 여부와 규모는 **평가 결과**와 **미선정 요건**을 고려하고, 지원 예산은 **해당 학년도 대학회계 편성 예산***에 따라 결정

* 평가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에 우수 등 학과 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 **(미선정)** 우수 · 향상도 우수 학과 선정 대상이 되더라도, 미선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미선정 요건(우수·향상도 우수 학과) 】

(1)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 경우 적용 기간은 시정 또는 변경 명령과 행정처분이 시행된 학년도를 모두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적용 기간은 해당 주기 인증 기간으로 한다.)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책정하기 위하여 시행한 평가에서, 소속 학부·학과가 입학정원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적용 기간은 해당 학과의 수업연한으로 하고, 예과·본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과정별 수업연한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법령 위반 사실 또는 감사 처분·조치 사항이 확인되거나, 대학 경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그 밖에 비교육적 또는 부적정한 운영 등으로 총장이 선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미흡 학과 지정) 캠퍼스 종합 순위** 기준 **상위 95% 이내에 속하지 못하는** 평가단위는 「**하위 5% 학과**」로 지정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 내외 감축**

※ 캠퍼스별 하위 5% 학과 수 산출 공식

(하위 5% 학과 수) = (평가단위 수) − (상위 95% 이내 평가단위 수)

※ 해당 평가단위의 모집단위 입학정원 감축 비율 등은 대학구조혁신위원회에서 결정

V | 시행 체계

□ **(대내 평가 규정 제정)** 통합 대학이 시행하는 대내 평가의 **종류 · 대상**과 **절차 및 방법 등 체계**를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대내 평가에 관한 현행 규정 폐지 후 제정 추진

【 대내 평가 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안) 】

• 대내 평가의 원칙 및 종류	• 평가별 영역·지표 설정(평가 계획 위임)
• 대내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평가 방법(계열 구분, 산정 방법, 상대평가 적용 등)
• 평가별 주기(실시 시기) 및 계획 수립	• 평가 결과(공시, 활용, 점검·확인 등)
• 평가별 대상 및 평가단위 설정	• 평가운영시스템 지정·전자적 처리

□ **(전담 체계 구성)** 효과적인 대내 평가 시행 등을 위하여 **IR혁신과(대학혁신전략실)**에서 **전담**하고, **교내 · 외 인사**로 **위원회** 구성

○ **(전담 부서) IR혁신과(대학혁신전략실 기획혁신처)**를 대내 평가를 전담하는 부서로 정하고, **통합 대학 사무분장 규정**에 **반영**

【 대내 평가 관련 사무분장 사항 】

- 대내 평가 기획 및 관리
- 교육조직·행정조직·교육기본시설·부속시설 평가
- 캠퍼스총장 성과계약 및 단과대학장 성과협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내 평가에 관한 사항(단, 연구소, 부설학교 및 학생군사교육단 제외)